

2026년 회계사 1차 시험 대비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2025년 12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른 “2025년 세법 이론노트” 국세기본법 본문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에 실시되는 회계사 1차 시험에 적용되는 개정사항만 반영하였으며, 2026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개정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현재 시행령 개정사항은 입법예고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시행령 개정사항은 개정세법 공개강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론노트 1장-11쪽

(2) 우편송달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로서 50만원 미만(시행령 개정 후에는 100만원 미만^(주) 개정안)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상 중간에납 규정에 따른 중간에납세액의 납부고지서
- 부가가치세법상 예정고지납부 규정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 신고납부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개정

(주) 25년 7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는 100만원 미만으로 개정될 예정이나, 아직 시행령 개정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차 시험 이전에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100만원 미만”으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 이론노트 6장-10쪽

- ③ 세법에 따른 예정신고기한 및 중간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로서 확정신고기한까지 그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한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개정 과세표준을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50%(위 ①의 a 또는 b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 또는 75%)를 감면하며,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는 제외).

3. 이론노트 7장-3쪽

(3) 국선대리인

-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심판청구인, 고충민원신청인** 개정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함)은 재결청(고충민원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관청을 말하며,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을 말함)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a.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 개인인 경우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 법인인 경우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수입금액(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 b. **5,000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c.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소유 재산은 토지, 건물 및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참고 고충민원이란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4. 이론노트 8장-9쪽, 10쪽

참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1.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위 c 또는 d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심의 요청을 받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권으로 보완할 수 있다. 개정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 a부터 e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고,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c 또는 d에 대한 결과는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상기 2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 개정)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상기 3에 따른 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려는 사실과 그 사유를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5. 납세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a부터 d까지의 사항으로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6. 납세자의 요청을 받은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상기 5에 따른 납세자의 요청 내용의 보완, 상기 6에 따른 결과 통지기간 및 그 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상기 2, 3, 4(보완요청, 결과통지, 연장)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으로 본다. 개정
8.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가 상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 c 또는 d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10. 상기 요청을 한 납세자는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